

경상북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소관기관 및 부서 :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

2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년 2월 24일, 박홍열 의원 외 14명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2월 28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3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

(2023년 3월 10일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토론, 의결)

3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박홍열 의원

나. 제안이유

○ 산림은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재와 연료 등을 제공하고, 또한 국토보전·수자원함양·자연 순환에 도움을 주는 소중한 자원임

○ 산림자원의 가치에 비해 활용도가 낮은 우리나라의 산림자원의 잠재력을 발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산림자원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(안 제3조)
- 경상북도 산림자원 육성계획 수립 규정(안 제5조)
-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사업과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(안 제6조~제7조)
- 산림자원 육성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·확산 규정(안 제8조)

4. 검토보고의 요지(수석전문위원 김성태)

가. 제정이유

- 경상북도 전체 면적(1,903,403ha)의 70.07%(1,333,691ha) 를 차지하는 산림¹⁾은 중요한 생태자원이자 경제자원입니다. 산림자원이 양적으로 증가하면서 산림자원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축적한 산림자원을 이용하여 경제적 효용과 산림휴양, 수원함양, 산지재해 방지, 탄소흡수 등 사회적 효용에 이르기까지 산림자원이 도민에게 주는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산림자원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.
-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산림자원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자원의 육성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안한 것으로,
- 타 시·도의 산림자원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사례를

1) 산림청. 2020년 산림기본통계.

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(2017.12.29.), 경기도(2022.3.4.), 충청남도(2022.4.11.) 등 3개 도에서 기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.

나. 주요내용

- **안 제1조**는 목적규정으로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제정됨을 명시하면서 경상북도의 산림자원의 육성기반을 조성하고, 경쟁력강화와 친환경 생활자재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.
- **안 제2조**는 “산림자원”과 “임업인”에 대한 용어정의 조항으로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과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²⁾규정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
[산림자원 용어의 정의]

<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>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생략

2. “산림자원”이란 다음 각 목의 자원으로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유용한 것을 말한다.

가. 산림에 있거나 산림에서 서식하고 있는 수목, 초본류(草本類), 이끼류, 버섯류 및 곤충류 등의 생물자원

나. 산림에 있는 토석(土石)·물 등의 무생물자원

다. 산림 휴양 및 경관 자원

○ **안 제3조**는 산림자원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

2)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(임업인의 범위)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
2.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
3.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
4. 「산림조합법」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

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,

[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]

<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>

제2조의2(산림의 경영·관리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2에 따른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산림의 경영·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-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- 안 제5조는 ‘경상북도 산림자원 육성계획’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선행 절차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. 다만, 계획수립 기간을 5년으로 규정한 것은,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3조(산림경영계획) 계획기간 10년, 「산림기본법」 제11조(산림기본계획) 에서는 계획기간 20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수립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- 안 제6조에서는 산림자원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기술개발 및 실태조사,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, 창업지원, 판매 및 수출촉진 사업, 생산·가공·유통시설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, 경제림조성, 정책숲가꾸기, 사회적 일자리, 임산물생산기반조성, 임산물 수출촉진 사업 등 이는 주무부서(산림자원과)와 산림자원개발원에서 기 추진 중인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.

- **안 제7조**는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임업인·기관·단체 등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, 관련 절차는 「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. 다만, 지원 대상인 임업인·기관·단체 등의 범위와 기준이 지원 사업별로 상이해 질 수 있어, 세부 지원기준 마련 등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- **안 제8조**는 산림자원 육성과 관련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우수기술이 발굴 및 보급·확산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고부가가치 산림자원 활용기법 연구, 인공지능·디지털활용 산림지리정보시스템 등 미래 신기술을 접목한 산림자원 관리가 요구되고 있어 필요한 조문이라 사료됩니다.

다. 종합의견

- 우리나라 산림과 임업은 산림의 노령화 진행, 순임목생장량 감소, 낮은 임가소득, 농·산촌 인구의 감소 등으로 인해 경제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·사회적인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균형적인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.
- 본 조례 제정으로 산림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고, 이를 통해 선순환 구조의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- 조례안의 주요 내용 또한 관련법령에 부합하고 있고, 입법

예고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.

- 다만, 산림자원의 육성계획 기간을 상위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, 본 조례안에 따른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대상에 대한 명확한 지원기준 등 세부지침 마련을 통해 효율적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7. 수정안의 요지 : 「없음」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「없음」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